

1. 개정 이유

안정적인 현역 법무장교의 충원을 위하여 「병역법」 제58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의3에 따른 법무사관후보생 외 「병역법」 제5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에 따른 법무분야 현역장교 병적 편입도 가능하도록 선발 대상 및 절차를 개선하고, 법무장교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려는 사람의 우선 지원의사를 확인 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사법시험제도의 폐지에 따라 선발대상 및 절차에서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무분야 현역장교 선발 대상 및 절차 개선(안 제2조, 제5조)

- 1) 현행 법령은 「병역법」 제58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의3 제3항에 따른 법무사관후보생의 법무분야 현역장교 선발만을 규정하고 있어, 「병역법」 제5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에 따른 법무분야 현역장교 선발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음.
- 2) 이에, 「병역법」 제5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에 따른 지원자를 포함하여 선발할 수 있도록 함
- 3) 법무사관후보생 병적에 편입되지 않거나, 법무사관 후보생 신분을 포기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법무분야 현역장교로 선발될 수 있게 됨

에 따라 안정적인 현역장교 충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나. 현역 우선지원의 근거 및 법무장교 선발 기준의 명확화(안 제4조의2, 안 제5조)

- 1) 현행 법령은 법무장교 선발 결정 요건에 “국방부장관에게 법무장교를 지원한 선발 대상자”만 규정되어 있어, 법무장교 우선지원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 2) 법무장교를 우선하여 지원한 사람과 「병역법」 제5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에 따른 현역장교 병적 편입신청자 사이에 그 의미가 혼동될 우려가 있음.
- 3) 이에, 국방부장관이 선발 결정 이전에 당사자의 법무장교 지원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조문을 신설하는 한편, 선발 결정기준을 ‘법무장교를 우선하여 지원한 사람’으로 명확히 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다. 선발 대상자 중 사법연수원 수료예정자 삭제

사법시험제도가 폐지되면서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사람이 부존재 하여 관련 내용을 삭제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병무청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법무장교의 선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법무장교의 선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58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의3제3항에 따라”를 “제58조제1항·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제119조의3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19조의3제1항제1호의2에 따른”을 “제118조제1항에 따라”로, “현역장교(이하 “법무장교”라 한다) 선발 대상자”를 “현역장교 병적 편입지원서를 제출한 사람과 같은 영 제119조의3제1항제1호의2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선발대상자”라 한다)을 구분하여 각 대상자들”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를 “입영이 확정되는 해에 실시하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후 5일 이내에”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 전단 중 “법무장교”를 “법무 분야 현역장교(이하 “법무장교”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후단을 삭제한다.

제4조제3항 중 “법무장교 선발 대상자(이하 “선발대상자”라 한다)”를 “선발대상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현역 우선지원 여부 확인) 국방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선발결

정 이전에 선발대상자 중 신체등급이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법무장교 우선 지원의사를 확인할 수 있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국방부장관은 병무청장이 제2조에 따라 통보한 선발대상자 중에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 중 법학전문대학원 평균성적이 우수한 순서대로 법무장교를 선발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제2조에 따라 통보받은 선발대상자로서 신체등급”을 “신체등급”으로, “해당하는 선발대상자”를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선발대상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제2항”을 “국방부장관은 제2항”으로, “신체등급이”를 “신체등급”으로, “신체등급 4급”을 “부족한 인원을 신체등급 4급”으로, “부족한 인원을 공개전산추첨방식”을 “공개전산추첨방식”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3. 제4조의2에 따라 법무장교를 우선하여 지원한 사람

② 국방부장관은 제4조의2에 따라 법무장교를 우선 지원한 인원이 제3조에 따른 선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 부족한 인원을 법무장교를 우선 지원하지 아니한 선발대상자(제1항제1호 및 제2호 모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중에서 공개전산추첨방식으로 선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병역법」 제58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의3제3항에 따라 법무 분야 현역장교의 선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제58조제1항·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제119조의3제3항에 따른 ----- -----.
제2조(선발 대상자의 명단 등 통보) 병무청장은 「병역법 시행령」 제119조의3제1항제1호의2에 따른 법무 분야 현역장교(이하 “법무장교”라 한다) 선발 대상자의 명단, 최종 신체검사에서 판정받은 신체등급 및 신원조사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조(선발 대상자의 명단 등 통보) ----- --- 제118조제1항에 따라 ----- ----- 현역장교 병적 편입지원서를 제출한 사람과 같은 영 제119조의3제1항제1호의2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선발대상자”라 한다)을 구분하여 각 대상자들--- 입영이 확정되는 해에 실시하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후 5일 이내에 ---.
1. 사법연수원을 수료할 예정인 사람의 경우: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는 해의 전 해 12월 20일	<삭 제>
2.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경우: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후 5일 이내	<삭 제>

제3조(선발인원) 법무장교의 선발 인원은 매년 충원에 필요한 인원 범위에서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과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별로 구분하여 선발인원을 정한다.

제4조(선발심사) ①·② (생략)

③ 서류심사는 법무장교 선발 대상자(이하 “선발대상자”라 한다)의 자격과 경력 등이 법무장교의 직무수행에 적합한지를 심사한다.

④ 성적심사는 선발대상자의 사법연수원 평균성적 또는 법학전문대학원 평균성적으로 심사한다.

<신 설>

제3조(선발인원) 법무 분야 현역 장교(이하 “법무장교”라 한다)-

--. <후단 삭제>

제4조(선발심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선발대상자-----

-----.

<삭 제>

제4조의2(현역 우선지원 여부 확인) 국방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선발결정 이전에 선발대상자 중 신체등급이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법무장교 우선 지원의사를 확인

제5조(선발 결정) ①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선발 대상자의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선발대상을 법무장교로 선발한다.
이 경우 법무장교의 지원에 관한 방법 및 지원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1. 제2조에 따라 통보받은 선발 대상자로서 신체등급이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선발 대상자
2. 제4조제3항에 따른 서류심사에 합격한 선발대상자
3. 국방부장관에게 법무장교를 지원한 선발대상자
4.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성적기준에 해당하는 선발대상자
 - 가. 사법연수원을 수료할 예정인 사람의 경우: 사법연수원 평균성적이 우수한 순서대로 선발
 - 나.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할 수 있다.

제5조(선발 결정) ① 국방부장관은 병무청장이 제2조에 따라 통보한 선발대상자 중에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 중 법학전문대학원 평균성적이 우수한 순서대로 법무장교를 선발한다.

1. 신체등급-----

 ----- 해당하는 사람
 2. -----
 ----- 사람
 3. 제4조의2에 따라 법무장교를 우선하여 지원한 사람
- <삭 제>

사람의 경우: 법학전문대
학원 평균성적이 우수한
순서대로 선발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제3호에 따라 법무장교를 지원한 선발대상자의 인원이 제3조에 따른 법무장교 선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무장교를 지원하지 아니한 선발대상자(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중에서 부족한 인원을 공개전산추첨방식으로 선발한다. 이 경우 그 부족한 인원은 제3조 후단에 따른 선발인원별로 각각 선발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체등급이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선발대상자의 인원이 제3조에 따른 법무장교 선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신체등급 4급에 해당하는 선발대상자 중에서 부족한 인원을 공개전산추첨방식으로 선발한다. 이 경우 그 부족한 인원은 제3조 후단에 따른 선발인원별로 각각 선발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4조의2에 따라 법무장교를 우선 지원한 인원이 제3조에 따른 선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 부족한 인원을 법무장교를 우선 지원하지 아니한 선발대상자(제1항제1호 및 제2호 모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중에서 공개전산추첨방식으로 선발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 신체등급 -----

----- 부족한 인원을 신체등급 4급-----
-- 공개전산추첨방식-----
-----, <후단 삭제>